

5. 土地去來許可區域의 指定

建設部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5. 8부터 9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 국토의 41.34%인 41,024.94km²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이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지역은 재지정하고 온천지구로 고시된 일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허가구역 지정배경〉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택지 및 공장용지의 공급, 5·8조치에 따른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매각조치로 토지공급이 확대되어 지가가 안정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선거 및 불가불안으로 인한 환물심리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용이해지고 개발사업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바,

- 토지거래허가제 실시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함.

〈허가구역 지정내용〉

- 재지정 대상지역은 '91. 2. 19로 허가제 실시기간이 만료되는 2직할시 5도의 659.13km²로써 명지·녹산 공업단지조성과 서해안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가상승이 계속 우려되는 지역임.
-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축립온천지구로 지정('90. 12. 6)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일원과 성수온천지구로 지정('90. 12. 22)된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일원의 193.35km²로 전북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임.
- 이렇게 지정하면 지금까지 전국토의 41.34%(41,024.94km²)이던 허가제 실시지역은 41.54%(41,224.33km²)로 늘

어나게 되며

신고구역은 완주군 상관면과 임실군 관촌면이 허가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토의 43.51%에서 43.39%(43,056.23km²)로 축소됨.

〈조치계획〉

- '91. 1월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91. 2. 19부터 '94. 2. 18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임.

※ 첨부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2.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요

〈허가기준〉

-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거래예정금액이 <표준지가×120/100 +

당해 토지의 취득관리비의 원리금>의 이하

- 토지의 취득목적이 실수요인지 여부
자기의 주거용 택지
주민의 복리,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전·답·임·어업용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공사업용 토지등
- 이용목적이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적합한지 여부
-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효력〉

- 무허가 또는 허가위반 거래 계약시 무효
- 허가의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별 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시·도	시·군·구	대상지역	면적
2직할시 4도	2시 9군 2구		852.48km ²
부산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구랑동, 송정동, 화전동, 생곡동, 지사동, 미음동, 범방동, 신호동	64.03
대구	달서구	이곡동, 신당동	6.36
경기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죽율동, 정왕동	292.14
	평택군	포승면, 현덕면	
	화성군	송산면, 남양면	
	옹진군	대부면	
충남	아산군	인주면	209.44
	당진군	송악면, 송산면, 신평면	
전북	군산시	산북동, 신관동, 개사동, 내초동, 오식도동, 비응도동	225.4
	완주군	상관면	(추가)
	진안군	성수면	(추가)
	임실군	관촌면	(추가)
전남	영암군	삼호면	55.11

2. 토지거래허가제의 요약

○ 목 적

- 투기적 거래의 규제로 지가안정 및 정상거래질서 확립

○ 허가구역 지정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

○ 허가대상

-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전에 시장·군수의 허가필요
- 허가대상권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허가대상면적

지 역		법정면적	시행면적
도시 계획 구 역	전용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200㎡ 초과	330㎡ 초과
	준공업, 생산녹지지역	200	600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용도지역미지정지역	90	270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	330	990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	600	660
도시 계획 구 역 외	농 지	1,000	1,000
	임 야	2,000	2,000
	기 타	500	500

※ 법정기준의 3배 범위내에 조정가능(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